



전라북도의회사회

54931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6층(1602호)/☎(063)284-5070, FAX286-9281 khe0830@hanmail.net

문서번호 전라북도의 제58호

시행일자 2019. 5. 28

수 신 시군의사회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주의 안내

1.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관련입니다.

2.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 사용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 소독지침 준수 여부 확인, 대장 관리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등)를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전달하시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상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의거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 해야 하므로, 관련 지침에 있는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1부,

2.「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1부. 끝.

전라북도의회사회장

<http://www.jmain.or.kr>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 ^{1,2}	1분 이상 ³	1분 이상 ³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조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심사기준조회

개최일/시행일	2018-10-31	일련번호	02-02	관련근거	고시 제2018-237호(행위)
구분	고시	심사지침개최일			
제목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1.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또는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행균·건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가.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
- 나.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

2.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내시경 세척·소독료 선별급여 적용 사항 반영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6-268호(17.1.1. 시행)
- 변경 전 고시제목: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행균/건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2.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하여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